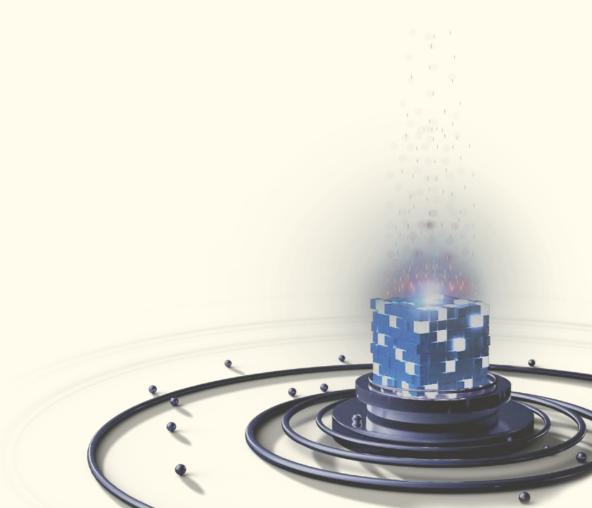
오픈소스와 특허

조정년 매니저/변리사 SK주식회사



CONTENTS

- 01 지식재산권 개요
- 02 오픈소스 관련 특허 검색방법
- 03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특허보복조항
- 04 특허보복조항 전략적 활용 방안



지식재산권=지적재산권=IPR(Intellectual Property Right)=IP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정 의	존속기간
			특허권 (특허법) Patent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써 발명수준이 고도화된 것 (물건, 방법)	20년
Г	특허청	산업	실용신안권 (실용신안법) Utility Patent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써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실용 있는 고안(물건)	10년
Ī	지식 재산권	재산권	디자인권 (디자인보호법) Design Patent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이 결합한 것으로 써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	20년
			상표권 (상표법) Trademark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호·문자 ·도형·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소리·냄새 또 는 이들을 결합한 것	10년 (갱신가능)
	문체부	저작권 (저작권법) Copyright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에 대하여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리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 권으로 구성됨	저작권자 사후 70년 (업무상 저작물은 공표 일로부터 7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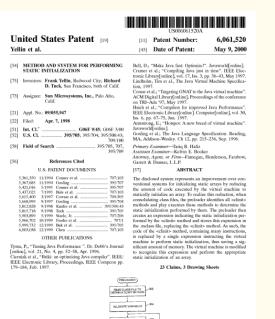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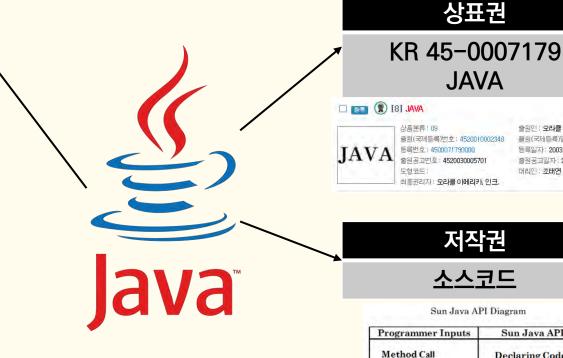
하나의 소프트웨어 여러가지 지식재산권이 포함됨

특허권

US6061520A

Method and system for performing static initialization





출원인 : 오라클 아메리카, 인크.

출원(국제등록)일자 : 2001.07.02

등록일자: 2003.03.25

대리인 : 조태연

출원공고일자: 2003.01.29

Programmer Inputs	Sun Java API
Method Call	Declaring Code
java,lang.Math.max (4, 10)	Package java.lang
(1, 10)	public class Math
	public static int max
1 1	(int x, int y)
	[222]
	Implementing
6 4	Code
4 41	{ if (x >y), return x else return y}



오라클 v. 구글 간 JAVA 관련 특허/저작권 소송



구글, 오라클 특허 침해 안 했다

임민철 기자 | 입력:2012/05/24 09:48 수정수정: 2012/05/24 10:24 컴퓨팅〉일반

구글 안드로이드가 자바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오라클 주장이 기각됐다. 구글과의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오라클이 받아낼 수 있는 배상 규모는 더욱 축소될 전망이다.

[출처: ZDNET Korea https://zdnet.co.kr/view/?no=20120524094817]

[미국] 구글, 오라클과의 자바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

한국저작권위원회 통상연구팀 김주현

지난 5일(미국 현지시간), 10년을 이어온 '자바 전쟁'에서 구글이 최종 승리를 거두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자바 API의 저작권은 인정하지만, 구글이 안드로이드에 자바 API를 사용한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면서 최종 구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the-copyright/view.do?brdctsno=48282#]



게임 관련 지식재산권 소송 - 저작권, 부정경쟁행위

팜히어로사가(킹닷컴) v. 포레스트 매니아(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 사건



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67553 판결문 발췌

1심(2015)

•저작권 침해 : 부정 •부정경쟁행위 : 인정

2심(2017)

•저작권 침해 : 부정 •부정경쟁행위 : 부정

3심 (2019)

•저작권 침해 : 인정
•부정경쟁행위 : 판단X



게임 관련 지식재산권 - 특허권

HOME 게임·인터넷

닌텐도, 팰월드제작사에 특허침해소송제기..."포켓몬과유사"

ペ AI리포터 ② 승인 2024,09,19 13: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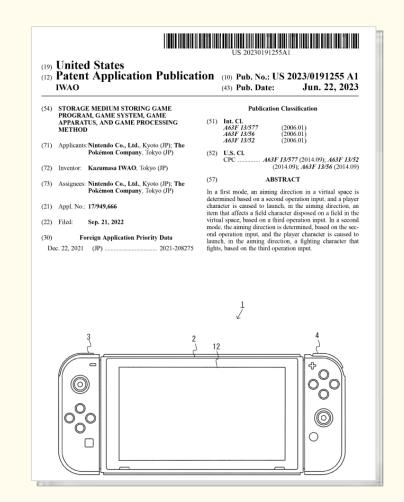
닌텐도가 팰월드 게임 제작사 포켓페어에 대해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포켓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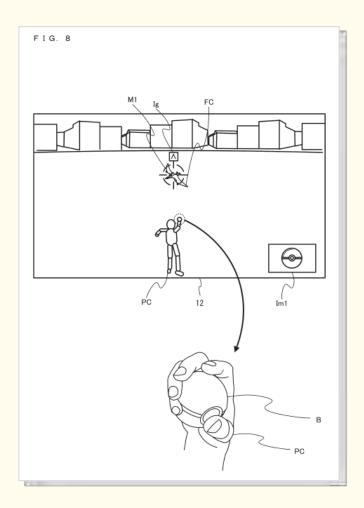
[디지털투데이 Al리포터] 닌텐도가 팰월드 게임 제작사 포켓페어에 대해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가 전했다.

[출처: Digital Today https://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4044]



게임 관련 지식재산권 - 특허권







게임 관련 지식재산권 - 특허권

╱오늘의 주요 사건

[2024.09.30]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미국/외국기업) v, Take-Two Interactive Software Inc (미국/외국기업)

미국의 IBM이 게임 회사 Take-Two Interactive 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계쟁 특허는 가상 공간의 쿼리 시스템, 사용자 인증 및 광고 제공 기술과 관련한 3 건의 특허로, IBM은 Take-Two 의 웹사이트 및 일부 게임 제품이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IBM은 지난 '21 년 5월부터 Take-Two 에 침해 사실을 알리고, 분쟁 해결을 위해 협상을 시도하였으나 Take-Two 는 불성실하게 대응하였고, 그 과정 중에 Take-Two 가 IBM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받은 Zynga Inc(IBM v, Zynga Inc, 1:22-cv-00590, D, Del,)를 지난 '22년 인수하면서, IBM은 Take-Two 가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Take-Two 는 이에 대응하여 IBM의 소제기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 입장을 밝혔다. 한편, IBM은 본사건에서 이자를 포함한 손해 배상과 변호사 수임료 등을 청구했다.

-11-11	특허번호	특허명칭
계생 트립	US7072849	Method for presenting advertising in an interactive service
계쟁 특허 정보	US7356704	Aggregated authenticated identity apparatus for and method therefor
	US8458209	Virtual world query response system

[출처: IP NAVI https://www.ip-navi.or.kr/ipnavi/dispute/daily/dailyDetailPopup.navi?newsSeq=217264]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특허를 신경 써야 함



[출처: 전자신문 https://www.etnews.com/2013071902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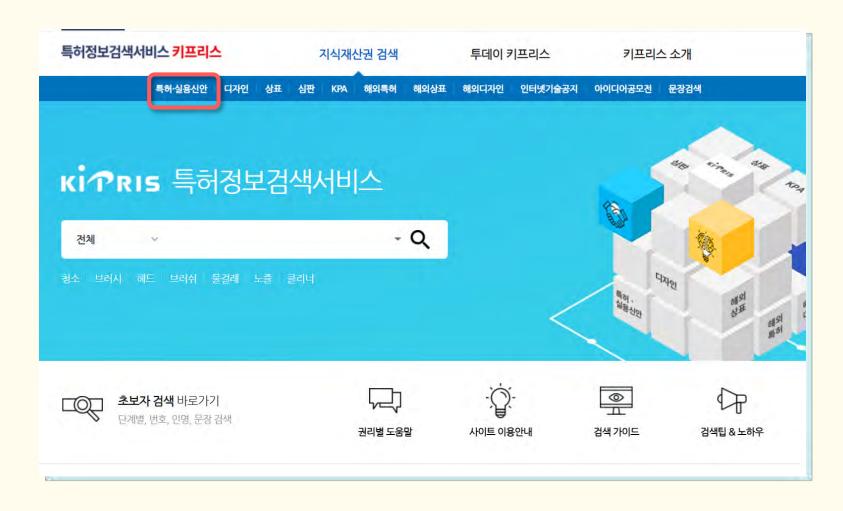
[출처: 전자신문 https://www.etnews.com/201604260000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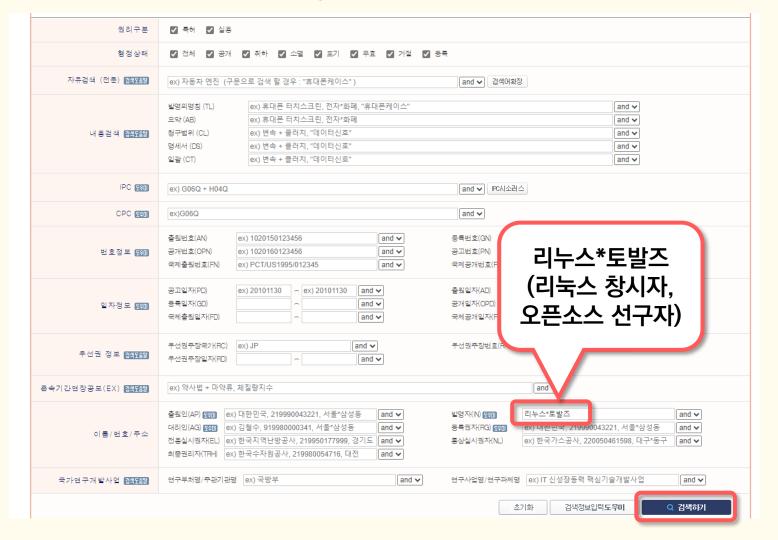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특허 검색 방법

- 1. 오픈소스SW를 개발한 사람의 이름을 **발명자** 칸에 입력하여 검색
- 2. 오픈소스SW를 개발한 회사의 명칭을 출원인, 등록권자, 최종권리자 칸에 입력하여 검색
- 3. 오픈소스SW의 <u>주요기능에 관한 키워드를 조합</u>하여 검색식을 작성하여 검색



















	(12) 등록록	허공보(B1)	
(51) Int. CI. ⁷ G06F 12/00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5년06월23일 10-0496944 2005년06월14일
(21) 출원번호 (22) 출원일자 번역문제출일자	10-2002-7004728 2002년04월 12일 2002년04월 12일	(65) 공개번호 (43) 공개일자	10-2002-0039370 2002년05월25일
(86) 국제출원번호 국제출원일자	PCT/US2000/040857 2000년09월06일	(87) 국제공개번호 국제공개일자	W0 2001/27767 2001년04월19일
(81) 지정국	국내특허 : 캐나다 중국	일본 대한민국	20012042132
	타 유럽특허 : 오스트리이 스페인 프랑스 영국 그 네덜란드 포르투칼 스웨	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30) 우선권주장	09/417.358 1999년 10월 13	3일 미국(US)	
		3일 미국(US)	
(30) 우선권주장 (73) 특허권자	09/417,358 1999년10월13 트랜스메타 코포레이션 미합중국 캘리포니아 9505		≣ 3990
	트랜스메타 코포레이션		≣ 3990
(73) 특허권자	트랜스메타 코포레이션 미합중국 캘리포니아 9505	4 산타 클라라 프리덤 써	≣ 3990
(73) 특허권자	트랜스메타 코포레이션 미합중국 캘리포니아 9505 토발즈리누스	4 산타 클라라 프리덤 써	≣ 3990
(73) 특허권자	트랜스메타 코포레이션 미합중국 캘리포니아 9505 토발즈리누스 미국캘리포니아95051싼타	4 산타 클라라 프리덤 써; 클라라우드덕애비뉴1050	≣ 3990
(73) 특허권자	트랜스메타 코포레이션 미합중국 캘리포니아 9505 토발즈리누스 미국캘리포니아95051싼타 케펠데이비드	4 산타 클라라 프리덤 써; 클라라우드덕애비뉴1050	3990



특허보복조항 개요

- 오픈소스 라이선스 중 일부는 오픈소스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u>특허 라이선스를 명시적으로 부여</u>하고 있음
- 단, 사용자가 해당 오픈소스SW 관련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할 경우,
 해당 사용자에 대한 <u>특허 라이선스가 해지</u>됨 (특허보복을 통해 무분별한 특허소송 방지)

[참고 : Apache License 2.0의 특허보복조항]

3. Grant of Patent License.

Subj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License, <u>each Contributor</u> hereby <u>grants to You</u> a perpetual, worldwide, non-exclusive, no-charge, royalty-free, irrevocable (except as stated in this section) <u>patent license</u> to make, have made, use, offer to sell, sell, import, and otherwise transfer the Work, where such license applies only to those patent claims licensable by such Contributor that are necessarily infringed by their Contribution(s) alone or by combination of their Contribution(s) with the Work to which such Contribution(s) was submitted. If <u>You institute patent litigation against any entity</u> (including a cross-claim or counterclaim in a lawsuit) alleging that the <u>Work or a Contribution</u> incorporated within the Work constitutes <u>direct or contributory patent infringement</u>, then any <u>patent licenses</u> granted to You under this License for that Work shall <u>terminate</u> as of <u>the date such litigation is filed</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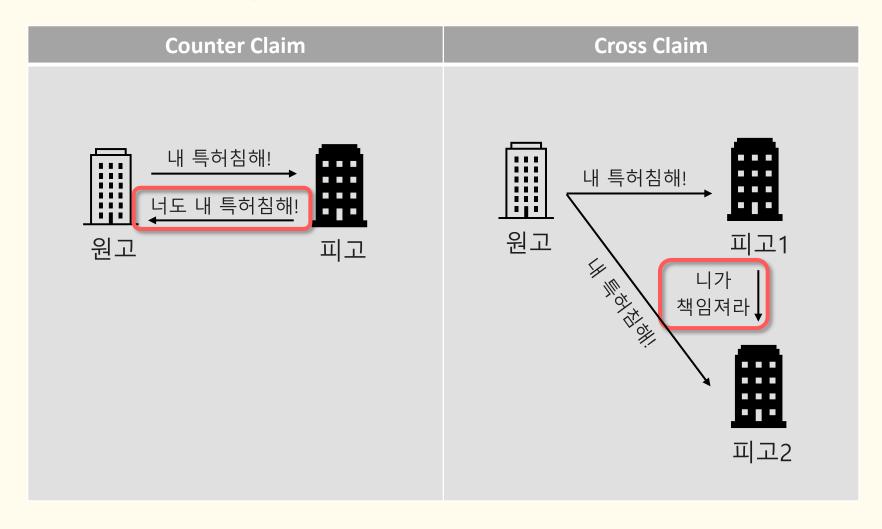


라이선스 별 특허보복조항 내용

No	라이선스명	적용 소송 종류	해지 범위	특허관련조항
1	Apache License 2.0	특허소송 (counter claim, cross-claim 포함)	특허 라이선스	3조
2	EPL 2.0	특허소송 (counter claim, cross-claim 포함)	특허 라이선스	2조, 7조
3	MPL 2.0	특허소송 (확인, counter claim, cross-claim 제외)	특허 라이선스	2조, 5조
4	<u>GPL 3.0</u>	특허소송 (counter claim, cross-claim 포함)	특허+저작권 라이선스 (명시적이진 않음)	8조, 10조, 11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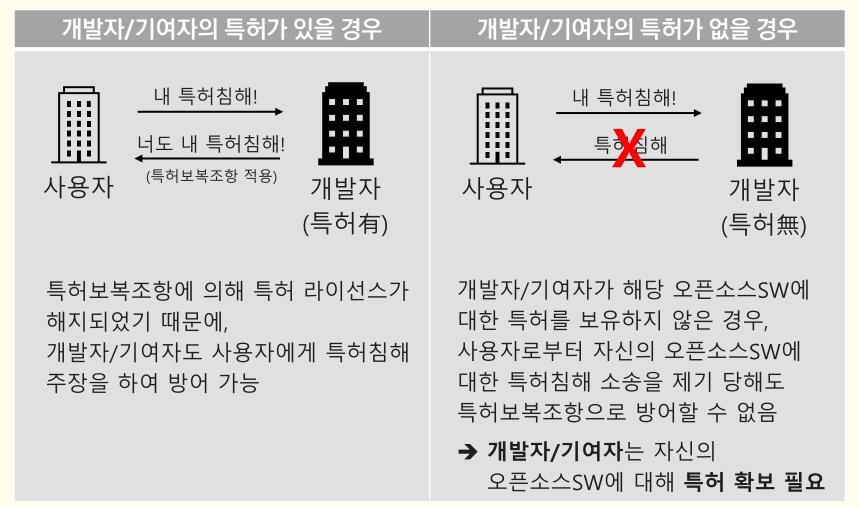
[참고: Counter Claim, Cross Cla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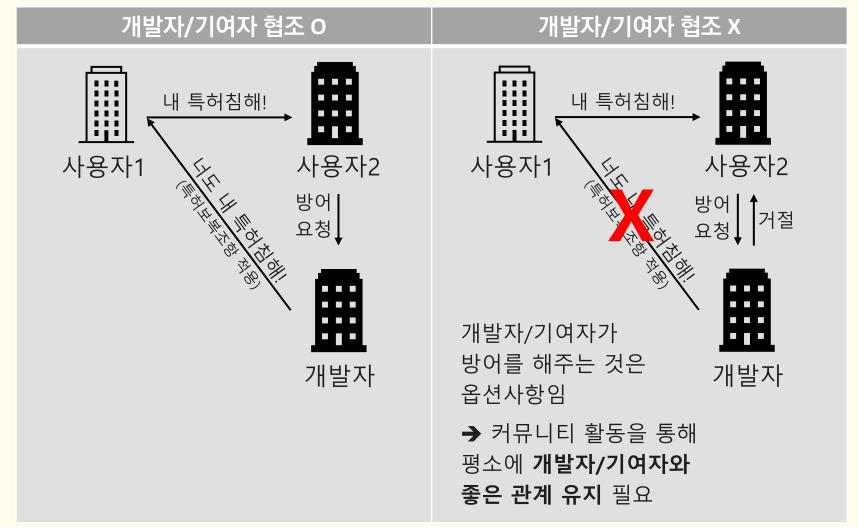
특허 소송 유형 별 특허보복조항 적용 방식

1) 오픈소스 개발자/기여자에 소송제기





특허 소송 유형 별 특허보복조항 적용 방식 2) 오픈소스 사용자에 소송제기



04

특허보복조항 전략적 활용 방안

[오픈소스 개발/기여 후 배포 전 오픈소스 특허보복조항 관련 확인사항]

- → 특허보복조항으로 인해 회사 핵심특허가 무력화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u>배포 예정 오픈소스SW</u>가 <u>특허라이선스 보복조항</u>이 있는 라이선스가 적용되는지 확인
- 회사 특허 중에 배포 예정 오픈소스SW와 <u>매칭되는 특허가 있는지</u> 확인
- 매칭되는 특허 존재 시 <u>핵심 특허인지 확인</u> (핵심특허: 공격용 특허, 수익화용 특허, 표준특허 등)
- <u>핵심 특허</u>일 경우, 해당 <u>오픈소스SW 배포 취소</u> →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따른 특허라이선스 부여로 인한 핵심특허 무력화를 방지하기 위함
- <u>핵심 특허 아닌</u> 경우, 해당 오픈소스SW <u>배포</u> 및 <u>매칭 특허 활용 현황 모니터링</u> (추후 핵심특허로 변경되는지 여부 고려)

04

특허보복조항 전략적 활용 방안

[공격적 활용: 특허소송 제기 전 오픈소스 특허보복조항 관련 확인 필요 사항]

- → 특허보복조항으로 인해 특허 소송 공격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
- **회사에서 사용중인 오픈소스SW**들 중 <u>특허보복조항</u>이 있는 라이선스가 적용되는 **오픈소스**들이 무엇인지 확인
- 특허소송에 활용할 <u>특허의 청구항</u>이 회사에서 사용중인 <u>오픈소스SW와 매칭</u>되는지 확인
- 매칭되는 오픈소스SW 존재 시 사용 중지할 수 있으면 사용 중지
- 사용중지 불가시 사용중인 오픈소스SW의 <u>개발자/기여자가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지</u>확인
- 해당 오픈소스SW 개발자/기여자의 특허가 해당 <u>오픈소스SW와 매칭되는지</u>확인 → 매칭 안되면 문제 없음
- 매칭되면 오픈소스SW 개발자/기여자의 특허로 인해 <u>회사의 특허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지</u>확인
- 오픈소스SW 개발자/기여자가 특허보복조항을 적용하여 <u>특허소송을 제기 할만한 자(또는 회사)</u>인지 확인
- 특허보복조항 리스크가 높을 경우, 특허소송에 활용할 <u>특허를 자회사 등에 양도</u>하여 <u>자회사 등이 특허소송을</u> <u>제기</u>하도록 조치

[방어적 활용 : 경쟁사 특허소송 방어를 위한 특허보복조항 활용 방안]

→ 특허보복조항을 이용해서 특허 소송을 방어할 수 있는지 확인

- 특허 소송제기 가능성이 높은 경쟁사가 있을 경우, 해당 경쟁사가 사용 중인 주요 오픈소스SW를 확인
- 해당 오픈소스SW를 전략적으로 사용 및 커뮤니티 기여 활동 수행
- <u>해당 오픈소스SW 관련 특허를 발굴</u>하여 확보
- 추후 해당 <u>경쟁사가 특허소송 제기</u> 시,
 - a) 사용만 했을 경우, 해당 <u>오픈소스SW 개발자/기여자</u>에게 특허보복조항을 통한 <u>특허소송 제기 요청</u>
 - b) 기여 및 관련특허 확보한 경우, 특허보복조항을 활용하여 직접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counter claim 제기



특허전문회사 NPE(Non-Practicing Entity)의 오픈소스 활용

- 소프트웨어 특허는 공격용으로 활용 어려웠음 : 소프트웨어 내부 알고리즘을 알 수가 없기 때문
 - → 하지만, 오픈소스SW와 관련하여는 <u>오픈소스 고지문</u>으로 오픈소스 내역 확인하여 특허침해 증거 확보 가능
- 공격특허 확보 전략: 오픈소스SW의 필수 기능 관련 특허 발굴/매입
- 오픈소스SW 관련 특허Pool 운영

특허법인/로펌의 오픈소스 특허보복조항 관련 서비스

- 주요 오픈소스SW들에 대한 특허맵 작성 서비스
- 회사 특허들에 대해 오픈소스SW 관련 특허보복조항 적용 가능성 검토

오픈소스 개발자/기여자의 특허보복조항 관련 고려사항

- 오픈소스에 대한 **특허 확보** 필요 → 특허보복조항 이용 가능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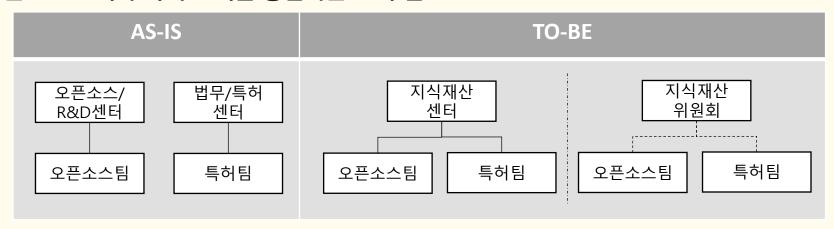


기업의 특허보복조항 활용

조직	특허보복조항 활용 전략
오픈소스 조직	 - 경쟁사가 사용하고 있는 오픈소스 확인 및 모니터링 → 해당 오픈소스 커뮤니티 활동 참여 및 기여 → 향후 해당 경쟁사와 특허소송 발생시 방어용으로 특허보복조항 이용 - 오픈소스 개발/기여 후 배포 시 회사 주요 핵심특허와 관련이 있는지 특허팀과 확인 필요 - 회사가 개발/기여중인 오픈소스SW와 사용중인 오픈소스SW를 특허팀과 공유
특허 조직	 회사 주요 사용 오픈소스SW에 대해 관련 특허 검토 및 특허소송 전략 필요 회사 핵심 특허 관련 오픈소스SW 개발/기여 현황 관리 필요 경쟁사가 사용 중인 오픈소스SW 관련 특허 전략적 확보 특허보복조항을 활용한 경쟁사 특허소송 방어 전략 수립

전략적 활용을 위해 오픈소스 조직과 특허 조직 간의 긴밀한 협업 필요

- 1) 회사에서 개발/기여/사용하는 <u>오픈소스SW와 특허 간의 관계</u>를 적절히 파악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통합관리체계 필요
- 2) 특허보복조항으로 인한 회사 핵심특허 무력화 방지
 - 오픈소스SW 사용 시 특허보복조항으로 인해 특허침해주장을 못하는 경우 방지
 - 오픈소스SW 개발/기여 시 무상 특허라이선스 부여 조항으로 인해 특허침해 주장을 못하는 경우 방지
- 3) 특허소송 방어에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특허보복조항을 전략적으로 활용
- 4) 오픈소스 조직과 특허 조직을 총괄하는 조직 필요



감사합니다

오픈소스와 특허

